

4. 물류시설 · 장비의 수급 ·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
5.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

6. 물류 표준화 · 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

6의2.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

7.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
8.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
9. 국제물류의 촉진 · 지원에 관한 사항

9의2.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· 지원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](#)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2. 시 · 도지사

3.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 · 단체 등

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·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](#)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·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](#)

제12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「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」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[<개정 2009. 6. 9.>](#)

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.

제13조(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연도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 [<개정 2008. 2. 29., 2009. 2. 6., 2013. 3. 23.>](#)

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· 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.

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[<개정 2013. 8. 6.>](#)

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<개정 2013. 8. 6.>](#)

1.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

2. 지역물류정책의 목표 ·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

3. 운송 · 보관 · 하역 · 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 · 철도 · 해운 ·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

4. 지역의 물류시설 · 장비의 수급 ·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
5.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6.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